

〈서울시 뉴딜일자리 자격배제요건 관련〉

(채인목위원장님)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서울시는 2020.3.6 서울시홈페이지에 2020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했음. 서울형뉴딜일자리 배제요건중 2가지 ①사업자 등록소유자(일반임대사업자포함), ②개인별로 최대23개월까지 가능함.
- 부모 합산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가점을 주고 있는데, 서울시에서 전세, 자가소유 하면 빚 유무와 상관없이 가점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임.

■ 건의사항

- 일반임대사업자(연 3천만원이하)는 배제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? 중장년층이 조기퇴직후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월 100만원 이하 다수임.
- 중장년층 자녀는 대부분 대학생, 고등학생으로 지출대비 월 임대소득을 배제요건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.
- 개인별로 최대 23개월 폐지요청.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민간에서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, 뉴딜일자리가 실질적인 직무교육, 경력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23개월을 초과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?

① 일반임대사업자(연 3천만원이하)는 배제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?

□ 답변

-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뉴딜일자리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.
- 임대소득이 미미하거나 세제 혜택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까지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에는 고용보험법 상 미취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참여가능 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임

※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(취업의 인정기준) 제6호

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- 6.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

○ 뉴딜일자리사업 참여배제 요건 완화 내용(예정)

2020년	2021년
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미만자 ⋮ ⋮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	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미만자 ⋮ ⋮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,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참여가능

② 개인별로 최대 23개월 폐지요청.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민간에서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, 뉴딜일자리가 실질적인 직무 교육, 경력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23개월을 초과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?

□ 답변

- 참여자들이 뉴딜 근무에 안주하지 않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민간일자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뉴딜사업의 취지상 개인별 참여가능 기간은 최대 23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(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, 2017년부터 적용)

※ 2016년도까지는 개인별 11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음

- 참여 가능 기간: 1인당 최대 23개월(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)

- 참여자는 단일 사업 또는 다수의 사업에 23개월 까지 참여가능

※ 23개월 연속근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참여가능한 상한선을 의미함.

다만, 해당 사업이 다음연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,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23개월 연속 근무도 가능.

③ 부모 합산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가점을 주고 있는데, 서울시에서 전세, 자가소유 하면 빚 유무와 상관없이 가점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임.

□ 답변

-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(표준안)상 재산상황 평가항목에 건축물, 주택,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금액이 1억원 미만은 20점, 1억원 ~ 3억원은 15점, 3억원 초과 10점의 배점을 두고 있을 뿐 별도의 가점이나 감점사항은 없으며, 재산상황 평가 시 차등을 두는 이유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
〈서울시 뉴딜일자리 나이제한 완화 관련〉

(채인목위원장님)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뉴딜일자리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,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를 대상으로 모집함.
- 평균 자녀나이 10세~15세 학교취학 세대 40대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은 고용된 기업체 또는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형성함.
-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체 정리해고 대상 1순위 또는 채용 기피 대상이 됨.
- 한편 서울시는 장년층 만 50세~67세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‘베이비 부머 보람일자리’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
■ 건의사항

- 한정된 자원에서 더욱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, 연령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.
- 현재 청년, 장년층 위주의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40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부재함. 가정의 주소득자인 40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나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 뉴딜일자리 정책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필요 하다 생각하는데 의견은?

□ 답변

-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가능한 연령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연령의 하한선만 정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년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만39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
- 청년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사업참여가 가능함
 - ※ '20년 뉴딜일자리사업 중 연령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사업
총 285개 사업중 78개사업 2,161명 규모
 - ※ '21년 뉴딜일자리사업 중 연령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사업(예정)
총222개 사업 중 67개사업 1,402명 규모
- 뉴딜일자리사업은 공모의 형태로 각 신청부서에서 사업추진 상 필요에 따라 참여대상을 일반 또는 청년으로 결정하여 신청하고 있음